

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

신청 장학금 종류 및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장학금명	수혜대상	방식	비 고
진리	성적우수자	별도 신청 없이 취득 성적 기준으로 선정	직전학기 성적으로만 지급
자유	가계곤란자	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(온라인)	

1. 주요 내용

가. 재학생

- 1) 진리(성적우수) 및 자유(가계곤란) 장학금 **중복 적용 가능**
- 2) 자유(가계곤란)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지급
- 3) 자유(가계곤란)장학금의 경우, 한국장학재단에서 선정한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,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
- 4) 자유(가계곤란)장학금은 **반드시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**
- 5) 자유(가계곤란)장학금 신청자 중 **기혼자**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것 이외에 **추가**로 부모의 가계에 관한 증빙을 이하의 별도 안내에 따라 기한 내 행정팀에 제출해야 함.
- 6) 진리(성적우수)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결정
- 7)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.(별도 안내)
- 8) **특별전형 중 가계곤란유형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**으로 입학한 자도 복지 자격 유지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자유 장학금을 **반드시 신청**해야 함.

나. 복학생

- 1) **2023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.**
- 2023년도 2학기 신청 시 **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선택 가능**
- 장학금 신청 시 <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>과 <2학기 소득 인정액 재조사 신청(최초 신청포함)>중 해당하는 소득·재산 조사 방법 선택 가능
 - ※ **<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>확정 시 소득 최신화신청 불가**

2. 자유장학금 신청

가. 개요

- 신청자 및 대상 가구원이 가구의 소득·재산상황과 장학금 지급자격요건파악 필요 범위 내의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 그 정보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가구의 소득분위를 산정하고,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함.

나. 신청자격: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, 평점 2.0 이상

다. 신청기간

1) 소득구간 산정 신청 기간: 2023. 5. 30.(화) 09:00 ~ 6. 27.(화) 18:00 (29일간)

2)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3. 5. 30.(화) 09:00 ~ 7. 4.(화) 18:00 (36일간)

※ 1차, 2차 신청기간 구분 없이 위 신청기간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.

※ 소득분위 산정결과 지연 방지를 위해 가급적 2023. 5. 30. ~ 6. 9. 기간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.

라. 신청절차

기 간	내 용	수행주체
5. 30. 9:00 ~ 6. 27. 18:00	장학금 신청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: 로그인> 장학금> 장학금신청> 신청서작성>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> '신청하기' 클릭 - 소속대학: 연세대학교 대학원, 학과/전공 : 법학(법학전문대학원) 신입생: 학적구분 '신입생' 선택 시 하단의 학교정보 입력불필요 - 신청 1~3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 필요	신청자
5. 30. 9:00 ~ 7. 4. 18:00	가구원 정보제공동의 - 대상 가구원: 미혼학생 → 부모, 기혼학생 →배우자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: 장학금> 장학금 지원구간>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정보제공 동의하기 - 가구원 동의는 1회로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한 사람은 이번에 가구원 동의를 할 필요 없음.	신청자 가구원
	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: 장학금> 장학금신청> 서류제출현황>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	신청자
5. 30.	소득재산조사 개시	한국장학재단
소득분위통보 14일 이내	이의신청(소득분위 확인이 아닌 통보시점 기준)	해당 신청자
8월 ~	확정된 소득분위 산정결과 학교에 통보	한국장학재단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.

※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**한국장학재단(1599-2000)**에 문의 바람.

※ **장학금 신청 → 가구원 동의 → 서류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, 기한 이후 별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**

※ 장학금 신청시 본인의 학번을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람.(학부 학번, 숫자 일부 기재 등의 오류 사례가 있었으며, 이 경우 본인 확인에 시간이 소요됨)

※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·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,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·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·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.

※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

:온라인(공인인증서) 동의가 불가능한 다음의 사유로 동의 제외를 용인할 수 없으며, 이 경

우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여야 함. 오프라인 동의는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에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 접수

- 1)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
- 2)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
- 3) 그 외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

마. 유의사항

- 1) 신청접수완료 순서대로 소득분위 산정결과가 나오며, 장학사정기간 이후 나온 산정결과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 접수하기 바람. 특히 이의신청 후 소득분위 재산정에 최대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므로 소득분위 확인 후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학생은 이의신청을 서둘러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.
- 2)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는 대출 학기에 장학금 수혜 시, 수혜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.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자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, 미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을 제한함.

바. 결과발표: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(8. 18.(금) 09:30부터 확인)

사.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

- 1) 제출대상: 한국장학재단에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한 기혼자
(특별전형 중 가계곤란입학자 제외)
- 2) 제출기간: 2023. 7. 17.(월) ~ 7. 19.(수) (09:00 ~ 12:00, 14:00 ~ 15:00)
- 3) 제출방법
 - 가)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봉투에 '장학금신청서 재증'이라고 표기해야 함.
 -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.
 -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.
 - 나)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 제출 가능.
 - 다)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장학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.
- 4) 제출처
 - (03722)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(광복관 206호)
장학금 담당자 (02-2123-3802)
- 5) 제출서류
 - 제출서류 중 **재정증빙서류** 제출 가족구성원 범위는 본인의 직계존속(부, 모)임. 재정증빙서류는 부모에 대하여 **각각** 1부 제출해야 함. 부모님에 대한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, 이에 대한 소명서(자유양식)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.
 - 가) 기본/필수 서류 목록표 1부
 - 나) **기본서류**: 장학금신청서(신청사유서 포함,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) 1부,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본인명의) 1부, 부모님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 1부, 거주상

황증빙(등기부등본,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) 1부

다) 재정증빙서류-부, 모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

※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갑근세영수증) 1부

- 2022년 기준

- 제출이 불가한 경우, 월별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
※ 월별 급여액과 납세액이 표기되는 갑근세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나야 발급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달리 1월 현재 발급 가능함.

라) 재정증빙서류-부, 모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

※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1부

-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,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을 제출

- 2022년 기준(2023년 5월 신고) 1부

마) 재정증빙서류-공통(부, 모 근로소득 유무 무관)

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
- 모든 지방세목 납부 현황 포함해야 함.

-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

- 2022년 기준 1부

※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신청하면 ‘모든 세목 과세(납세) 사실 없음’으로 발급되므로, 과세사실이 없어도 발급 받아서 제출

※ ‘모든(혹은 전체) 세목 과세(납세) 사실 없음’이 아닌 ‘재산세 과세(납세) 사실 없음’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접수 불가

② 건강보험증 사본(부모님이 등재되어야 함) 1부

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2021년 ~ 현재의 건강보험 자격변동현황 포함) 1부
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1부

- 2022년 기준(2022. 1 ~ 12.) + 2023년 기준(2023. 1. ~ 6.)

- 이 기간 중 납부하지 않는 달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서(자유양식)를 제출해야 함.

6) 기타서류

가) 기타서류 목록표(기타서류가 없는 경우, 제출하지 않음) 1부

나)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(신청사유서 기재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등)

7) 서류 첨부 순서

장학금신청서 → 기본/재정증빙 서류 목록표 → 가족관계증명서(본인명의) →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 → 거주상황증빙(등기부등본,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) →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모 모두) → 갑근세영수증(해당 가족구성원 모두) →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(해당 가족구성원 모두) → 건강보험증 사본 →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모 모두) →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해당 가족구성원 모두) → 기타서류 목록표(해당자에 한함) →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8) 유의사항

- 가) 제출 시 서류의 순서는 상술한 서류의 순서에 따라야 함.
- 나) 신청사유서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하여야만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음.
- 다) 재정증빙서류는 부, 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, 기본서류와 재정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사과정 상 불이익이 있으며,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.
- 라) 제 증명은 신청마감일로부터 **1개월 이내**(2023. 6. 27. 이후)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.
- 마) 제 증명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, 그에 대한 소명서(자유양식,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)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.
- 바) 부모 및 학생 본인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, 건강보험증 사본은 통합하여 1부만 제출하면 되고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각각 제출하면 됨.
- 사)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.
- 아) 제 증명서류 점검중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시 심사과정상 불이익이 있고,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.

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